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적용 시기 명확화 〉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44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적용 시기 명확화	2

I. 제안경위

2025년 6월 24일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질’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되,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 분류하여 면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해 그 안전성을 입증하기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시행 예정임.

그러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지 않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예상되는바, 적용례 신설을 통해 관련 규정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하고자 함(안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적용 시기 명확화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인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분류되는 적용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u><신설></u>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u>제3조(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0호의3, 제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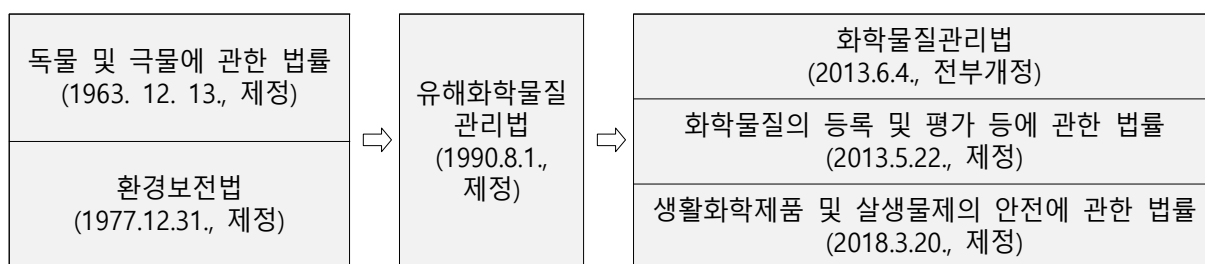
환경부는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기존에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및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1990년 「유해화

「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여 1991년 시행하였는데, 해당 법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를 통해 그 정도에 따라 일반 화학물질, 유독물, 특정 유독물로 구분하고 각 구분별 관리 범위를 차등화하여 관리하여 왔음.

그런데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¹⁾가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²⁾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2012년 구미 산업단지에서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의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확립되었음.

[화학물질 관리 법률의 제·개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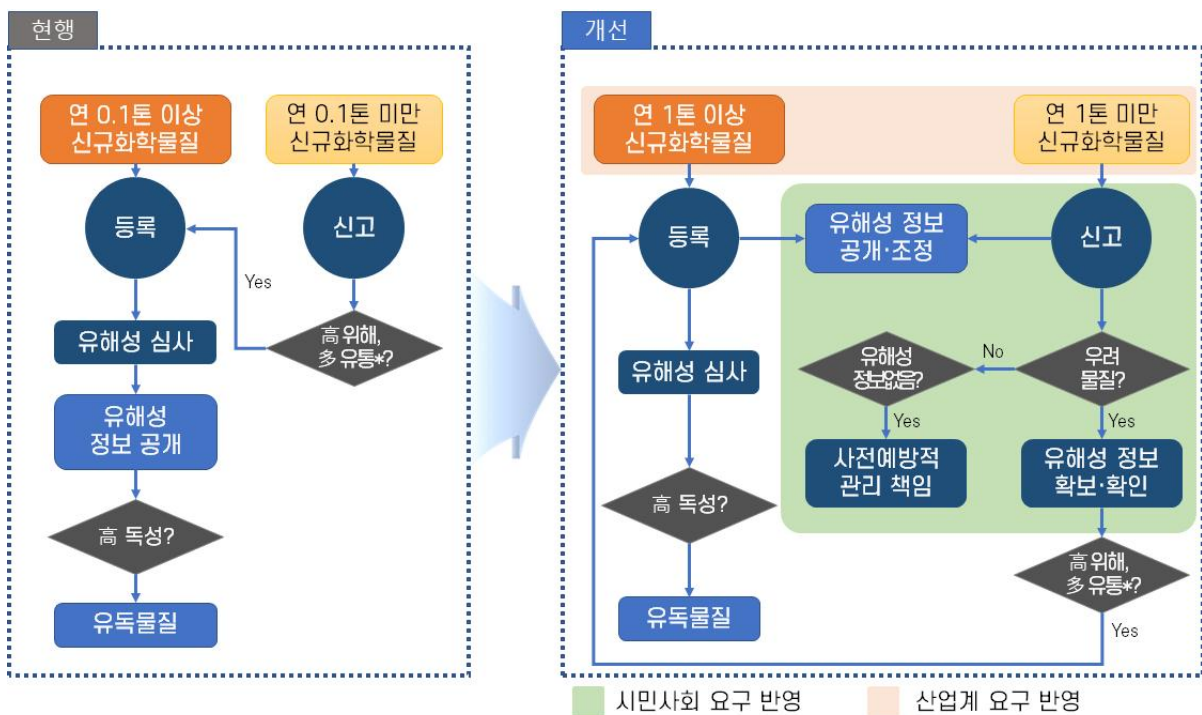


1)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PHMG(폴리헥사메틸렌가아니딘),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12.9.5, PGH(염화에톡시에틸가아니딘)-'13.8.5)은 현재 모두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17.2.8. 제정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가 진행 중에 있음.

2) 2012년 2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 미상의 폐손상의 원인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정부)

환경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민·산·관 합의점을 찾고자 2021년 5월부터 화학안전정책포럼을 구성·운영하였고, 논의 경과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³⁾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음.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신고 기준 완화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안)]



자료: 환경부

동 법의 주요 개정 사항⁴⁾은 ① 국내에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

- 3) 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의안번호 2126236), 2024.01.09. 본회의 의결 및 2024.02.06. 공포
 ②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의안번호2126207), 2024.01.09. 본회의 의결 및 2024.02.06. 공포
- 4)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의3.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

고자 할 때의 등록 기준⁵⁾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준 완화로 인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보완하기 위하여 ② 등록·신고된 화학물질 중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하

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⑥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2024. 2. 6.>

1. 제10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3. 유해성미확인물질

5)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시 제출자료(법 제14조)]

조 항		등록	신고
법 제14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제1호)	의무 제출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제2호)		
	화학물질의 용도(제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제4호)		
법 제14조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제5호)	의무 제출	신고하려는 자가 소유한 경우에만 제출 (시행규칙 제15조의3)
	화학물질의 유해성(제6호)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제7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제8호)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제9호)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에 관한 자료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며, ③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안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책무를 부과하였음.

동 개정 법률의 시행(2025.8.7.)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⁶⁾ 및 관련 이해관계자⁷⁾가 해당 법률의 시행일(2025.8.7.) 이전에 등록·신고된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와 이에 따른 책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유해성미확인물질’ 정의에 대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일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법률의 부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개별 법률에 별도의 적용례를 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기본법」⁸⁾에 따라 장래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개정

6)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신고·등록된 33,000여 종의 신규화학물질이 해석에 따라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소급 적용될 수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공동의견

8)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8.>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계 및 국민 당사자의 명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6

-
-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